

제9장 평생교육

제40조 (교육과정의 연계운영)

-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, 전문대학, 4년제 대학, 산업체 등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상호연계 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연계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1조 (공개강좌)

- ① 우리 대학 학생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-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2조 (비정규, 특별과정 운영)

- ① 우리 대학에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우리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실시한다.
-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42조의2 (주문식 교육과정의 운영)

- ① 총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3조 (시간제 등록제 운영)

- ① 우리 대학에서는 비정규 성인학습자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 등록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간제 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하고, 선발방법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③ 시간제 등록제를 위하여 선발하는 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.
- ④ 시간제 등록생은 우리 대학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.
- ⑤ 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⑥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⑦ 독자적 모집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들의 수업방법은 강의실 표준수업은 물론 시공간을 초월

한 수강생들의 편의와 질적향상을 목표로한 사이버 및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수업, 주말 및 특별기간 집중수업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- ⑧ 독자적 모집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의 수업일수는 본교의 수업일수와 동일하나 집중수업의 경우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⑨ 독자적 모집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의 수강과목명과 학점수가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과 다를 경우 성인학습자의 학습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점인정 표준교과명과 학점수로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⑩ 기타 시간제 등록제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44조 (전공심화과정)

-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1-2년 이내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은 동일 학과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에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.
- ③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,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④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은 해당 대학의 동일 학과를 졸업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.

제44조의2 (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)

- ① 전공심화과정의 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심의, 의결, 입학사정, 자체감사 실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의장(교학처장) 1인을 포함하여 학과의 교수, 산업체인사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업체 인사를 50% 이상 포함한다.
- ③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4조의3 (전공심화 교육과정 편성위원회)

- ①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의 운영 및 연구를 위해 전공심화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둔다.
- ② 의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업체 인사를 50% 이상 포함한다.
- ③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5조 (산업체위탁교육)

-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9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로 이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선발기준은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산업체 근로 청소년들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,

야간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재학기간을 산업체 근무 기간으로 보아 해당자로 한다.

- ③ 학생 수에 따라 별도학급(40명 이상)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학과의 정원 외 학생 수용능력과 실습조건들이 허용할 경우 당해 학과 입학정원의 10% 내에서 흡수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위탁의 대상자는 재직회사에서 추천을 받아 별도의 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- ⑤ 산업체위탁과정은 휴학, 전과, 재입학을 불허한다.
- ⑥ 산업체위탁과정은 학사경고 및 유급규정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⑦ 전형에 관한 지원자격, 지원절차 및 전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5조의2 (계약학과)

- ①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(이하 “계약학과”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80학점(3년제는 120학점)으로 하며, 전공교과 및 교양교과의 이수요건(시행세칙 제15조)을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③ 계약학과의 학생은 휴학, 전과, 재입학을 불허한다.
- ④ 계약학과는 학사경고 및 유급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⑤ 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46조 (학점은행제)

- 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 특별과정, 전공심화과정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인정을 받은 과목을 운영하도록 한다.
- ②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, 학점은행제 운영편람과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을 근거로 한다.
- ③ 운영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교양과목 및 필요전공과목, 일반과목들이어야 하며,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운영한다.

제46조의2 (사이버지식교육원) 우리 대학은 이러닝(e-learning) 사업을 목적으로 부설기관인 사이버 지식교육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제47조 (대학의 장애 의한 학위 수여)

- ① (학위수여) 우리 대학은 대학의 장애 의하여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본과에 준하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 1. 학점은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2항 에 정한 2년제 전문대학 졸업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80학점을 이수한 자로서, 우리 대학의 평생교육원/사이버지식교육원, 학점은행제, 학점이 인정된 특별과정, 시간제등록제에서 48학점 이상(타전공 36학점)을 이수한 자.

2. <삭제>

3. 우리 대학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한 설치학과에 한하여 별지3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. 그 외의 전공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정하는 학위수여조건에 따른다.
- ② (학적의 관리) 대학교의 장애 의하여 학위를 받는 자들에 대한 학적의 관리는 학위수여 후 학점인정내역 및 성적자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이관 받아 우리 대학에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.
- ③ (학위수여절차) 우리 대학의 장애 의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.
 1.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, 학위신청서, 학점인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/사이버지식교육원에 제출한다.
 2.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/사이버지식교육원은 학위수여심사를 통해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(학위수여 절차 및 요건을 담은 학칙사본, 학위증 서식 첨부)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정한 기간에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.

제10장 학생활동

제48조 (학생자치기구)

- ① 삼육교육의 이념 하에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보건대학교 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.
- ② 우리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, 휴학이나 제적,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.
-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④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중지된다.
- ⑤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(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)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두며, 학생생활지도위원은 교학처장, 교학처팀장, 교목실장, 인성교육원장 각 학과장으로 구성한다.

제49조 (학생회비)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.

제50조 (학생단체의 조직)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1조 (학생활동의 금지)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